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11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12월 30일

3. 제안 이유

○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되는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, 물류정책심의위원회,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 등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함은 물론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

4. 주요 골자

○ 위원회는 지역경제활성화시책, 지방공공요금의 조정,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, 물류시책,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(안 제2조)
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(안 제3조)

-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,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(안 제5조)

- 위원회의 간사는 경제과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유통정책담당사무관으로 함(안 제7조)

-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화대책분과위원회, 물가대책분과위원회, 유통산업분쟁조정분과위원회, 유통·물류정책분과위원회, 소비자정책분과위원회, 전자거래정책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(안 제8조)

5.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폐지시키고

○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물류정책위원회 등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

○ 무분별한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